

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채수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1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

발 의 자: 채수지, 경기문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용일, 김원중, 김지향,
김형재, 김혜영, 박상혁,
박영한, 서상열, 송경택,
이종태, 이종환, 장태용,
최민규, 최유희, 허·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전환 하는 한편,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능 재정비가 필요함
-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등은 관련 조항 정비 및 현행화

2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(안 제9조)
- 나.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다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
- 라. 사회적경제 특구(한시사업)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(안 제3조, 제8조, 제10조,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희망경제위원회”를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·자문한다”를 “심의·자문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1부 시장과 위촉직”을 “위촉직”으로, “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이 된다”를 “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한다”를 “위촉하되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
2.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
4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
5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
6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제1항 중 “임대 및 무상 임대”를 “임대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“<u>사회적경제 특구</u>”란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공 사례를 창출한 지구를 말한다.</p> <p>9. “<u>사회적경제 예비특구</u>”란 “<u>사회적경제 특구</u>”로 지정되기 이전의 단계로, 서울특별시가 “<u>사회적경제 특구</u>”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구를 말한다.</p> <p>제8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) ① 시장은 제9조의 <u>희망경제위원회</u>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(이하 “<u>기본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제8조(사회적경제 기본계획) ① ----- <u>사회적경제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9조(사회적경제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~ 5. (생략)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, 부위원장은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이 된다.

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,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시의 예산 업무 담당 국장

4.·5. (생략)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회적경제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 심의·자문할 수 있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구성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④ ----- 위촉직 -----
----- 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

⑤ -----
----- 위촉하되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⑥ (생략)

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,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⑨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⑩ · ⑪ (생 략)

제10조 (사회적경제 특구의 지정

및 지원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
의 지역기반을 강화하고 서울형
사회적경제 창출을 위하여 자치
구와 협력하여 “사회적경제 예
비특구”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성공적으로 사업을
수행한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
“를 “사회적경제 특구“로 지정
할 수 있다.

③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“사회
적경제 예비특구”로 지정된 자
치구 및 참여 기업에 다음 각
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사회적경제 예비특구” 사업
추진에 필요한 사업비
2. 우선구매, 공간, 금융, 교육,
연구개발 지원 등에 있어 우
선 지원
3. 시 또는 자치구 관련 부서의
협업 및 의견수렴
4. 그 밖에 “사회적경제 예비특

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⑪ · ⑫ (현행 제10항 및 제11항
과 같음)

<삭 제>

구”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
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④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“사
회적경제 특구“와 연계가능한
사업 추진 시 “사회적경제 특구
“로 지정된 자치구 또는 참여기
업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검토해
야 한다.

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 지원센
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
한다.

1.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
의·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
의 종합적 지원
2.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
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
4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
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
5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
지원 및 업종, 지역 및 광역단
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지원
6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
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

제12조(지원센터의 기능) -----

1.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
영에 필요한 컨설팅
2.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
및 판로지원
3.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
4.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
지원
5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
홍보 및 인식 제고
6.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
지원에 필요한 사항

7.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

<삭 제>

8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

<삭 제>

9.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

<삭 제>

10.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

<삭 제>

제15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,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·용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.

제15조(시설비 등 지원) ① -----

----- 임대 -----
-----.

②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

제16조(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)

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① -----

-----.

1. ~ 3.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

<삭 제>

5. ~ 8. (생략)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